

보도시점 2026. 10. 5.(월) 배포 즉시

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는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0.5(월) 한국경제, 「인건비 공포에...자영업자 60% “감원하거나 알바 쓸 것”」

2. 설명 내용

-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근거하며,
 -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전면 적용되나,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 공휴일, 근로시간 제한, 초과근로 가산수당, 해고 제한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'01년 이후 추가 확대 없이 유지
- 이에 이재명 정부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‘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근로기준법 적용확대’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
 - 이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노무관리 및 비용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
- 기사에서 언급한 연구 보고서는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어려움과 함께 수용 가능한 적용 규정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며, 특히 업종별, 영업실태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참고자료임

○ 또한, 연구 보고서에서는 상시 고용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일부 법령을 차등 적용하는 일부 국가 사례를 제시했으며,

○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(5인 이상 상시근로자)에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, 상당수 규정을 그 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

□ 향후 노·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,

○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의 취약한 노무관리 역량 및 비용 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임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	책임자	과 장 송유나 (044-202-7526)
	근로기준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강석원 (044-202-7529)

